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20128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민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부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12. 22.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가합4239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순번 2, 6, 7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6. 3. 11.부터 2016. 9. 12.까지 체결된 별지 목록의 ‘송금액 중 원고 청구 거래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B에 대하여는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44,00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제1심 공동피고 D, E, F에 대하여는 각 B와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D, E, F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B와 원고가 각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B, 제1심 공동피고 D, E, F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B의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범행

1) B은 2011. 1.경 원고에게 “내가 여행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항공권블록사업이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블록으로 구간을 정해서 미리 염가에 대량 구매하여 성수기에 여행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투자이다. 내가 확보하고 있는 항공권은 타이항공 블록이고, 노선은 괌, 세부, 홍콩, 태국인데 1년 예산이 괌, 세부노선은 각 6억 원, 홍콩 노선은 10억 원, 태국노선은 30억 원 내지 4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권 거래가 은밀하고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G 명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H의 I 회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 항공권 투자는 장기투자과 단기투자과 이루어지는데 장기투자는 원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며 월 2.5%의 수익금을, 단기투자는 원금을 몇 달 후 반환하며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I 회장은 약 500억 원 상당 항공권블록사업을 운영하고 나는 I에게 약 80억 원 정도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2) 그러나 당시 B은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항공권블록사업을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아 원고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블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B은 B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원고로부터 2011. 1. 21.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까지 127회에 걸쳐 합계 1,447,054,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B의 태국 골프텔사업 관련 사기범행

1) B은 2011. 9.경 원고에게 “내가 태국 J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내에 골프텔을 지어 한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항공권블록사업 수익도 얻고 부동산 가치도 오를 수 있으니 큰돈을 벌 수 있다. 골프텔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약 12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위 골프텔 지분 15%를 주겠으니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나는 위 골프텔 말고도 태국에 골프장 부지 크기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2) 그러나 당시 B은 위 나.항과 같이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거나 피고 B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원고에게 위 골프텔사업 지분 1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B은 B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원고로부터 2011. 10. 6. 150,000,000원, 2011. 10. 7.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B의 형사처벌

- 1) 원고는 2017. 2. 1.경 B의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사기범행에 대하여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B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공소가 제기되었다.
-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0. 22. 피해자인 원고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B을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고합41, 111(병합), 115(병합), 2019고합90(병합) 판결].
- 3) 이에 B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0. 28. 피해자인 원고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다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죄명 등을 병합하여 B을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07, 2021노480(병합)1] 하였다.
- 4) 이에 B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2. 4. 14. 위 판결에 B의 피해자 X에 대한 각 사기행위에 관한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2021도15375 판결), 파기 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 6. 16. B을 징역 8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B의 피고에 대한 송금

B은 피고에게 2016. 3. 11.부터 2016. 9. 12.까지 12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송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2,000,000원을 송금하였다(그중 별지 목록 ‘송금액 중 원고 청구 거래 금액’란 기재 송금액에 관한 송금행위를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호증,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7. 2. 1.경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무렵 B이 원고의 투자금을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B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던 2017. 9. 27.경에는 2011. 2. 5.부터 2014. 10. 20.까지 B 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가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률행위는 2016년에 있었던 B의 이 사건 송금행위인데, 원고가 2017. 9. 27.경 확보한 B 계좌의 거래내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불과한 점, 당시 원고가 B이 원고의 투자금을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B이 2016년도에도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로 돈을 증여 내지 변제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년경 이미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B이 원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1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B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은 B에 대한 다른 투자자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 내지 생활비로 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2020. 11. 26. B을 상대로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2. 1. 26. “B은 원고에게 444,0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20.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이 분리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와 같이 확정된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성립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송금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항공권블록사업 등을 빙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나 2016년경에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외에도 기망당한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고 그들의 피해액도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 이상인 점,2) B은 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었던 당시 B이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7, 18, 19호증, 을가 제4, 6,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AN에 대한 2021. 4. 19.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피고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년에는 합계 178,258,799원을, 2016년(2월부터 12월까지)에는 합계 264,007,500원을, 2017년(8월부터 12월까지)에는 합계 12,400,000원을, 2018년에는 합계 48,350,000원을, 2019년에는 합계 68,541,121원을, 2020년(10월까지)에는 합계 49,9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위 송금 내역 중 1회 송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015. 3. 19. 및 같은 해 3. 20.의 각 2,500만 원, 같은 해 6. 30.의 3,000만 원, 같은 해 9. 11.의 2,200만 원, 2016. 2. 5.의 2,000만 원, 같은 해 2. 17.의 1,000만 원, 같은 해 3.부터 같은 해 9.까지의 별지 목록 '송금액'란 기재 각 돈, 2019. 2. 11.의 1,000만 원, 2020. 2. 14.의 1,900만 원, 2020. 10. 21.의 1,000만 원이다.

다)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B의 피고에 대한 1회 송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합계액은 2월은 680만 원, 3월은 1,030만 원, 4월은 1,400만 원, 5월은 1,500만 원, 6월은 500만 원, 7월은 850만 원, 8월은 700만 원, 9월은 500만 원이고, 그 총합은 7,160만 원이다.

라) 피고는 2016. 3. 11. AP에게 220만 원, AQ에게 100만 원, AC에게 200만 원, 2016. 3. 14. AR에게 420만 원, 2016. 3. 15. AR에게 500만 원, 2016. 5. 10. AD에게 1,500만 원, AS에게 100만 원, 2016. 5. 11. AD에게 1,000만 원, 2016. 5. 12. AS에게 150만 원, 2016. 5. 14. AS에게 200만 원, 2016. 5. 15. AT에게 940만 원, 2016. 5. 27. AE에게 500만 원, 2016. 8. 11. AU에게 1,000만 원, 2016. 8. 12. AC에게 456만 원, 2016. 8. 19. AU에게 500만 원, 2016. 8. 25. AU에게 300만 원, 2016. 8. 31. AV에게 651만 원, AC에게 72,000원, 2016. 9. 12. AU에게 626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한편 B은 원고 외에도 피해자 S으로부터 2016. 5. 19.부터 2016. 11. 11.까지 합계 564,930,000원,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8. 25. 120,000,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2016. 8.

22.부터 2017. 5. 8.까지 합계 488,000,000원을, V, W과 공모하여 2016. 3. 4.부터 2016. 11. 30.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8,600,000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2015. 4. 8.부터 2016. 5. 10.까지 합계 617,200,000원을, 피해자 Y로부터 2014. 10. 7.부터 2015. 3. 24.까지 176,500,000원을 각 편취하였고, 피해자 Z로부터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451,000,000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행위로 인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B은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로서 취득한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다.

사) AV은 'AW'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아) 피고와 B은 부부로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순번 2, 6, 7 기재 각 돈 합계 3천만 원(= 순번 2의 1천만 원 + 순번 6의 1천만 원 + 순번 7의 1천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와 B 사이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별지 목록의 나머지 순번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B이 투자자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등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돈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쓰기 위한 생활비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B의 위 나머지 순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송금행위가 편파변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행위를 편파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은 2011년부터 2017. 5.경까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 변제를 하였는데,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9, 11 기재 각 돈의 일부에 관하여는 B의 피해 변제조의 송금임을 자인하고 있고, B의 2016. 2. 5.자

송금 2,000만 원 및 2016. 2. 17.자 송금 1,000만 원에 관하여도 B의 피해 변제조의 송금임을 자인한다. 원고는 위 자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당심에 이르러 제외하였다(피고의 AA, AB, AP, AC, AD, AE에 대한 송금 부분).

나) 원고가 자인하는 위 돈을 제외하고도,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8 내지 12 기재 각 돈을 송금 받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AQ, AR, AS, AT, AU에게 적게는 100만 원(AQ, AS)에서 많게는 1,000만 원(AU)을 송금하였는바, 위 사람들은 피고를 통하여 B에게 투자 등을 한 사람들로 불소지가 있고, 위 순번 기재 각 돈 중 위 사람들에게 대한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식비, 주유비, 자녀의 교육비, 가구 구입비 등으로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은 B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2015년에는 합계 178,258,799원, 2016년에는 합계 264,007,500원에 이르렀으나,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인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에는 합계 12,400,000원, 2018년에는 합계 48,350,000원, 2019년에는 합계 68,541,121원, 2020년에는 합계 49,900,000원 등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는바, 2016년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의 재원은 편취금으로 보이고, 피고와 B의 관계, 송금의 빈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송금액 전체가 피해 변제금 내지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별지 목록 순번 2, 6, 7 기재 각 돈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 변제금 명목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생활비라는 것인데, 2016년의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 외에 1회 송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돈의 합계가 7,160만 원에 이르고, 특히 그중 5월의 경우는 1,500만 원, 6월의 경우는 500만 원으로 합계액이 2,100만 원인 점, 피고의 지출 규모로 짐작되는 피고 부부의 생활비 수준 등에 비추어, 5월 내지 6월에 속하는 별지 목록 순번 2, 6, 7 기재 각 돈을 피고 부부의 생활비로 보기에에는 지나치게 많고, 특별히 위 돈이 피고 부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이유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

마) 피고의 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은 입금되는 순간 기존의 돈과 혼화되므로, 별지 목록 순번 2, 6, 7 기재 각 돈의 송금일 이후에 생활비로 쓰인 내역이 있더라도 위 각 돈이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이상 위 돈이 생활비로 송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별지 목록 순번 2, 6, 7 기재 각 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위 돈에 관한 최종적 처분 권한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별지 목록 순번 2, 6, 7 기재 각 돈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송영승, 판사 이현우, 판사 채동수

별지

목 록

금액 단위: 원

순번	송금일	송금액	송금액 중 원고 청구 거래 금액
1	2016. 3. 11.	12,000,000	7,800,000
2	2016. 5. 9.	10,000,000	10,000,000
3	2016. 5. 10.	20,000,000	5,000,000
4	2016. 5. 11.	20,000,000	10,000,000
5	2016. 5. 26.	10,000,000	5,000,000
6	2016. 5. 27.	10,000,000	10,000,000
7	2016. 6. 17.	10,000,000	10,000,000
8	2016. 8. 11.	10,000,000	10,000,000
9	2016. 8. 12.	10,000,000	5,440,000
10	2016. 8. 16.	10,000,000	10,000,000
11	2016. 8. 31.	10,000,000	9,928,000
12	2016. 9. 12.	10,000,000	10,000,000
합 계		142,000,000	103,168,000

1) B은 원고 외에 항공권블록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을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고합772, 2020고합530(병합), 2020고합727(병합) 판결],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해자인 사건과 병합되었다.

2)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6. 5. 19.부터 2016. 11. 11.까지 합계 564,930,000원, 피해자 T로부터 2016. 8. 25. 120,000,000원, 피해자 U로부터 2016. 8. 22.부터 2017. 5. 8.까지 합계 488,000,000원, V, W과 공모하여 2016. 3. 4.부터 2016. 11. 30.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8,600,000원, 피해자 X로부터 2015. 4. 8.부터 2016. 5. 10.까지 합계 617,200,000원, 피해자 Y로부터 2014. 10. 7.부터 2015. 3. 24.까지 176,500,000원을 각 편취하였고, 피해자 Z로부터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451,000,000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